

##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재공고)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견적”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                             |      |               |
|---------------|-----------------------------|------|---------------|
| 용역명           | 창원시 벚나무 실태조사 용역             |      |               |
|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일원                 |      |               |
| 과업개요          | 학술·연구 용역 1식 ※ 상세사항 과업지시서 참고 |      |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50일                 | 기초금액 | 금100,000,000원 |
| 용역예정금액        | 추정가격                        |      | 부가가치세         |
| 금100,000,000원 | 금90,909,091원                |      | 금9,090,909원   |

### 2.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7. 27.(월) 10: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7. 30.(목)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7. 30.(목) 11:00,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녹지과  
입찰집행관 PC

※ 반드시 공고문 및 설계서 등 첨부된 문서를 전부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재입찰 : 재입찰시 입찰 당일 14:00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5:00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지하지 않음을 미리 안내드리오니,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면세업자 및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3. 입찰참가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견적제출

### 4. 입찰 참가자격[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제한 및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불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다. 지방계약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창원시**에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라.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에 따른 **나무병원(1종)**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공공구매정보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업체

## 5. 입찰서 제출

- 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등

-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pm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88%) 이상** 견적자 중 최저가 순으로 선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2인 이상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

자를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 이용 -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7. 입찰서 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및 규정 숙지

- 가. 입찰공고일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녹지과](http://www.g2b.go.kr)(☎055-225-7034)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계약집행기준,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과업지시서, 관련 회계 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9. 입찰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 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 모든 입찰 참가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1. 기타 참고사항

- 가.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나. 본 용역은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6조(채권의 매입대상 등) 제1항 및 [별표1]매입대상 및 매입기준에 따라 지역개발채권 1.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다. 본 입찰에 대한 공고는 나라장터([www.g2b.go.kr](http://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 결과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 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 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 창원시 감사관(☎055-225-2201)
  - 과업내용, 기술관련 사항 :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녹지과 박성욱(☎055-225-7035)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녹지과 김진화(☎055-225-7034)

2026. 7. 24.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재무관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분임)재무관 귀하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창원시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     |         |      |                                |
|-----|---------|------|--------------------------------|
| 발주자 | 발주기관    | 발주부서 | 발주날짜                           |
|     | 발주내용    |      | [ ] 공사 [ ] 용역<br>[ ] 물품 [ ] 기타 |
|     | 수의계약 사유 |      |                                |

|                |     |    |                                |
|----------------|-----|----|--------------------------------|
| 계약상대자<br>(확인인) | 성명  | 소속 | [ ] 개인 [ ] 법인<br>[ ] 단체 [ ] 기타 |
|                | 연락처 | 주소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                           |
|---|--------------------------------------------------------------------------------------------------------------------------------------------------------------------------------------------------|---------------------------|
| ①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br>[ ] 해당없음 |
| ② |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br>[ ] 해당없음 |
| ③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br>[ ] 해당없음 |
| ④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br>[ ] 해당없음 |
| ⑤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br>[ ] 해당없음 |
| ⑥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br>[ ] 해당없음 |
| ⑦ |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br>[ ] 해당없음 |
| ⑧ |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br>[ ] 해당없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